

(앞쪽)

제	호
수산생물방역관증	
사진 (2.5cm×3cm)	
성명	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·도지사	

56mm×80mm [백상지 80g/㎡]

(뒤쪽)

수산생물방역관증	
소속:	
직위/직급:	
성명:	
생년월일:	
위 사람은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	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·도지사	직인

1. 이 증표를 지닌 사람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
검사, 질문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「수산생물질
병 관리법」 제7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
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,
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
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